

知(的)所(有)權(紛)爭(事)例

英國著作權協會의 레코드實施料事件

—店舖內레코드演奏도 公式演奏看做—

<1979年 1月 17日 잉글랜드高法判決>

- 1. 原告 : 英國著作權協會(PRS)
- 2. 被告 : 하리켄 체인
- 3. 事件概要

PRS(Performing Right Society Ltd.)는 1975年 하리켄 체인所有의 런던市內 3個 店舖를 相對로 레코드의 店舖內演奏料, 즉 레코드使用料의 請求訴를 提起하였다.

그 以前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으며 더우기 레코드店에서 常時 繼續하여 레코드를 트는 적이 없었고 또한 全體店舖中에 들리도록 틀지도 않았다. 레코드를 걸 때는 顧客의 要求에 따라 防音壁부스나 헤드폰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75年頃에 이르러서는 레코드商店에서 開店中 라우드스피커를 통하여 店內의 모든 사람에게 들리도록 레코드를 틀어놓을 뿐 아니라 레코드나 테이프 또는 音樂裝置의 散賣方式도 바뀌고 있었다. 즉 큰 百貨店에서는 걸리는 레코드가 라우드스피커에 의해 中繼되어 店舖內에 백그라운드뮤직이 흐르게 되었다.

또한 레코드店舖들이 大型化됨에 따라 드디어 使用料를 청구하기에 이르렀고 레코드散賣業界는 이를 反對하고 나서자 PRS는 하리켄 체인을 상대로 使用料請求訴를 제기한 것이다.

4. 判決要旨

被告인 하리켄은 原告의 提訴에 대하여 첫째 問題의 演奏는 公式演

奏가 아니라고 主張하였다. 즉 레코드商店에서 레코드를 거는 것은 從業員에게 親近感을 갖게 되어 受買意慾을 돋구게 되고 또한 레코드를 사기 쉽게끔 雰圍氣가 造成되며 聽覺의 展示로서 팔기 위하여 展示하는 結果가 될 뿐 아니라 顧客이 그 레코드를 사기 전에 그 레코드를 들을 수 있으므로 從業員이나 사려는 사람이 그 레코드의 瑕疵有無를 確認하게 된다.

따라서 PRS의 會員은 레코드賣出로서 收入을 올리고 있으므로 레코드賣出의 促進도 된다는 論理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윌킨슨判事는 店內레코드演奏도 公式의 演奏로 解釋하고 피고의 抗辯을 却下하였다.

다음 피고의 둘째 항변은 가령 레코드商店에서의 연주가 公式의 演奏라 할지라도 著作權法의 目的으로 보아 그같은 音樂演奏는 協會에 使用料를 支拂할 일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 PRS의 會員으로부터의 著作權讓受渡는 레코드商店에 관해서는 暗黙속에 留保되며 그 유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윌킨슨判事는 이에 대해서도 著作權者의 依頼(Submision)가 있으면 協會의 定款에 記載되어 있을것이 必要하며 다른 諸外國의 作曲家, 作詞家, 出版者, 諸外國의 協會에도 適用해야 한다 하여 피고의 주

장을 採用하지 않았다.

結局 原告인 PRS의 勝訴가 되었고 被告側은 抗訴가 棄却되었다.

5. 解説

國家에 따라서는 音樂著作權者인 作詞者, 作曲者는 거의가 音樂著作權協會에 權利를 委屬하는 예가 적지 않다.

日本에서도 公衆에 直接 보이거나 듣게 하는 目的으로 聽衆앞에서 연주가가 上演 또는 연주할 경우에는 著作者가 그 著作物의 公式上 演奏에 關하여 排他的 權利가 있다고 認定한다. 다만 公式의 演奏가 아니면 著作權은 미치지 않게 된다.

著作權法上 노래를 부르거나 노래를 레코드化하여 그 레코드를 再生해서 연주하는 것도 같은 論理에 該當한다는 것이다.

